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위한

진단서 작성 안내

문의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사무국
1544-9761

달력으로 보는 8주 기준

9월 9. 10. 사고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월 10. 29까지 7주 이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월 11. 6부터 8주 초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사고일** 2026. 9. 10.(목)
- **7주 이내** 9. 11.(금)-10. 29.(목)
- **8주가 되는 날** 11. 5.(목)
- **8주 초과** 11. 6.(금)부터

치료 종료 예정일은 청록색 구간 (8주 초과)의 날짜로 기재해 주세요.

- 경상환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등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예시의 자료 제출기한은 2026. 10. 29.(목)입니다.

* 예시 날짜이며, 사고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했습니다(초일 불산입)

01 진단서 발급기준 |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이 진단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치료 종료 예정일이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하는 날**일 것
- 검토 대상 **상병별 치료 필요기간**을 명확히 기재할 것
- **향후 치료가 필요한 사유**(검사소견, 치료변화 등)를 기재할 것

* 단순히 "향후 치료 필요" 등으로 기재하기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구체적인 기간 또는 치료 종료 예정일과 향후 치료가 필요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호한 기재

향후 치료 필요

구체적인 기간 기재 예시

사고 이후 8주 초과일로부터
약 O주 간의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검토 제외

아래에 해당하면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7세 이하 영유아
- 임산부

검토 제외 대상은 사전에 안내해 주세요.
의료기관에서도 이 점을 숙지하여 안내해 주시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재 예시이며,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에 한하여 8주 초과 치료 필요기간을 명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02 제출 서류 안내 |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위한 의무기록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 진단서
- 진료기록부
- 영상 CD(촬영 시)

선택 서류

- 사고입증 서류

03 서류 발급 비용

보험회사등이 부담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 발급 비용 → 보험회사등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의 발급비용은 보험회사등이 부담합니다.

해당 보험회사등에 문의

환자가 직접 발급 → 비용 문의 → 해당 보험회사등

환자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 비용은 해당 보험회사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